

전임교원 재임용·재계약 심의 지침

제정 2009. 5.

개정 2012. 3. 1

개정 2012. 9. 1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조(재임용심의기준)와 교원인사 규정시행세칙 제11조(재임용, 재계약 심의기준)에 명시된 재임용·재계약 심의에 관해 필요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의대상) 임용·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 중 재임용·재계약 심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·재계약 신청을 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의대상이 된다.

제3조(심의기구) 재임용·재계약 심의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.

제4조(심의자료) 교원 재임용·재계약 심의자료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자료로 하며, 경우에 따라 기타 심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 단, 기타 심의 자료는 상호 합의하여 임용계약서에 기록 한 것에 한한다.

제5조(심의기준) ① 재임용·재계약 기준은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평균 650점 / 1,000점(총장부여점수 제외)이상으로 하며 미달될 경우 재임용·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2007년도 이후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총장 가감점 평가(±50)를 제외한 1,000점 만점 점수를 반영한다.

2. 2007년도 이전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발전영역점수(300점)를 제외한 700점 만점 점수를 1,000점 만점 기준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제외한다.

② 제①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경우, 2007년 업적평가 결과는 600점 만점이므로 1,000점 만점 기준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한다.

③ 실처장 보직수행을 사유로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경우,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없는 해는 해당 년도의 최고점수를 취득점수로 부여한다.

④ 외국인교원의 경우, 수업평가 결과와 학과(혹은 부서) 의견을 참고로 한다. 수업평가 결과가 임용기간 중 평균 3.7(5.0만점)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.

⑤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기여가 현저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임용·재계약 심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심의결과) 위 심의기준에 의한 결과는 재임용·재계약 심의 평정표(서식 1)로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 재임용·재계약 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
제8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자 재임용·재계약 심의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자 재임용·재계약 심의부터 시행한다. 단, 2011년 이후 재임용·재계약 심의는 본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자 재임용·재계약 심의부터 시행한다.

